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2 | 2024.07.02. (2024.06.24~06.3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24~06.30)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예정(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업무 이관, 부문별 전략 기능 신설)이며,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부 기능 강화 필요에 따라 신설키로 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기재부, 과기부 등)>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발표한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키로 하였으며, ①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규모 대폭 확대 ②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 ③ R&D·인력양성 등 분야 집중 재정지원 ④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대폭 높이고 인프라 비용도 적극적으로 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기재부)>는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5.14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써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 → 3/4 이상), ② 이자유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함, ③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에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게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감독·분쟁조정권도 부여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에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인천시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10인)**」,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의원 등 12인)**」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색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0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국회 각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배정이 마무리되어 제22대국회 개원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7/2(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7/3(수) 경제분야, 7/4(목) 교육·사회·문화분야**로 각각 실시될 예정입니다.

※ 제22대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 (2024-06-29 현재)

그리고 <운영위·과방위>는 현안질의, <정무위·산자위·국토위>는 간사 선임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안위>에서는 간사 선임 외 “화성공장 화재” 관련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부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9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발표(관계부처 합동) 9
- 경제안보품목 300여 개로 확대 발표(관계부처 합동) 13
- 「기업 연구개발(R&D) 스코어보드」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15
- PF 연착륙을 위한 소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금융위원회) 1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기획재정부) 1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행정안전부) 2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5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2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2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29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문화체육관광부) 30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2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3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3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5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3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3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38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병배의원 등 10인)	3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4인)	40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4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의원 등 13인)	4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42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의원 등 10인)	4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44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45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의원 등 12인)	45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46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4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3인)	4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4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44인)	49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55인)	4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의원 등 15인)	5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11인)	5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5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5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5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5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의원 등 10인)	54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의원 등 10인)	5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2인)	5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의원 등 17인)	5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의원 등 10인)	5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의원 등 10인)	57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2인)	5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3인)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3인)	59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의원 등 10인)	6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6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24~06.30) [바로가기](#)

- [중국]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 [금융]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회원의 불법적인 카드승인 취소로 미지급된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카드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ESG] 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 등	2024-07-01
---------	---	------------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번 정부조직 개편 대상은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 신설로서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업무 이관 및 부문별 전략 기능 신설 등을 통하여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예정임**. 아울러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교육부장관이 수행하던 “사회부총리”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할 예정임.

그리고 “정무장관”은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부 기능 강화 필요에 따라 신설키로 하였음

두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임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과기부 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 -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공공의 적극적 비용분담	2024-06-26
-------------------------	--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금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5.23)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임. 현재 주요국 간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마련함

* 미국은 첨단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對中 수출통제 조치 시행('22.10~)

⇒ 미국·일본·EU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지원 방안 발표

* (美) 「반도체과학법」 제정('22)을 통해 527억불 규모의 보조금·대출 재원 마련
 (日)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를 통해 1.7조엔 규모 기금 조성
 (EU) 「EU 반도체법」 제정('23)을 통해 430억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
 - '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하여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 개시할 예정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triangle 0.8 \sim \triangle 1.0\% p$, 중소·중견기업은 $\triangle 1.2 \sim \triangle 1.5\% p$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됨
- ②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확장(스케일업) 및 대형화 지원**
 - '25년까지 3천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금년 7월부터 소부장·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
- ③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
 -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
- ④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5~‘27년 약 5조원 집중 투자**
 -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 강화
- ⑤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인프라)을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 분담**
 -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추진
 -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
 -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 추진
 - 1단계로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여 3기가와트(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

< 추진 전략 >

- ◇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 추진
 -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7조원 저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펀드** 투자규모 **대폭 확대**
 -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R&D·인력양성 등 분야 집중 **재정지원**
 -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대폭 **높이고 인프라 비용**도 적극적으로 **분담**

정책목표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 · 성장 생태계 구축

1. 금융지원

대출

-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 '24.7월부터 즉시 가동
- 일반 대출 대비 $\Delta 0.8 \sim \Delta 1.5\%$ 우대
- 현금 1조원+현물 1조원 출자

펀드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 α 로 확대
- 기존 펀드(~'25, 3,000억원)
- '24.7월 지분투자 개시
- 신규펀드 8,000억원 신설

2. 세제지원

적용
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및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적용
범위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SW 대여 ·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료 등 추가
- 국가전략기술 · 일반 R&D 동시 연구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공제

감가
상각

-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5→3년)

3. 재정지원

R&D

- 대규모 R&D 예타 신속 완료,
글로벌 R&D 확대

사업화

- 국산 AI반도체 실증 · 상용화 등 지원,
첨단 설계 · 성능 검증장비 공동이용 지원

인력

-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 · 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 확대

4. 인프라 지원

도로

- 용인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타 면제 추진 및 국비 지원

용수

- 용인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 예타 면제 추진 및 수자원공사 비용분담

전력

- 용인국가 · 일반산단 전력 적기공급
- 산단 내 LNG 발전소 건설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금융지원		
•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24.7월
• 산업은행에 2조원 현금 · 현물 출자	기재부	'25~
• 반도체 생태계 펀드(~'25, 3,000억원) 투자 개시	금융위	'24.7월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8,000억원) 조성	금융위	'25~
[2]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R&D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재부	'24.下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	기재부	'24.下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기재부	'24.下
• R&D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재부	'24.下
[3] 재정지원		
• R&D · 사업화 · 인력양성 등 재정지원 확대	기재부	'25~
[4] 인프라 지원		
• 용인 국가산단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토부 기재부	'24.下
• 용인 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구축 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환경부 기재부	'24.下
• 용인 국가 · 일반산단 전력 적기공급 지원	산업부	'24.下~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경제안보품목 200개 → 300여 개로 확대 발표

-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등 논의

2024-06-27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사령탑(컨트론타워)으로서 6/27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등 논의하였음

정부는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논의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며 **4대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점검(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
-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

②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

-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
-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연구개발(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
-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 검토

③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

-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 검토
-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

④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기본체계>

◇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 및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법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 제시

- 4대 정책방향,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핵심과제 마련
-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공급망기금 등 정책 추진기반 확립

목표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4대
정책
방향①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 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 ②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②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 ①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
- ② 법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8대
정책
과제③ 핵심기술 경쟁력·
보호체계 강화

- ①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
- ② 기술유출 예방 등
보호체계 강화

④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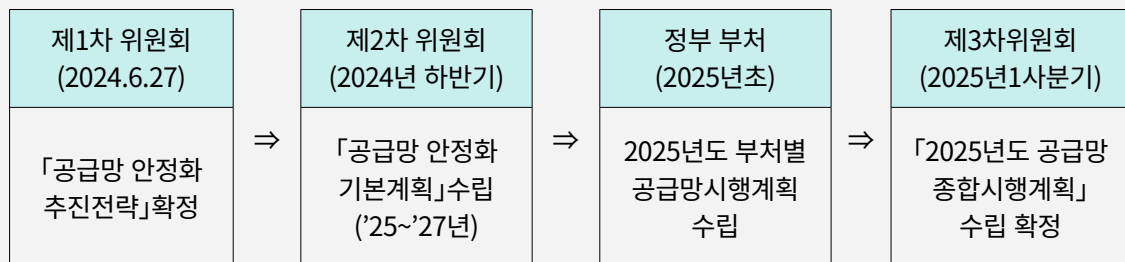
- ① 적극적·전략적
대외전략 수립·추진
- ②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기반①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출범② 공급망기금
적기 가동③ 공급망 3법 및
민관협업체계 구축

정부는 향후 이러한 전략하에 아래와 같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추진일정과 계획을 제시함

- ('24.7~) 분야별 전문위원회, '민관협업 공급망 연구반' 등을 신속하게 구성 가동
 - 공급망안정화 전략을 기반으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보완
 - 공급망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분야별 협 단체, 기업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24.3Q) 공급망기금 운용계획 확정 → 선도사업자 등 지원 개시
 - 공급망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조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對국회 소통 추진(최대한 8월 중 가동 추진)
 - * 기재위 추천 2명, 부처 추천 4명, 수는 1명 등
- ('24.8~) '25년 공급망기금 관련 국회 보증동의안 준비 제출
- ('24.4Q)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 수립 발표
 - 향후 3개년('25~'27)을 시야에 두고 도전적 정책목표를 제시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풍부하게 보완
- (~'25.1)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시행계획('25) 수립 및 의결

< 향후 위원회 추진일정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연구개발(R&D) 스코어보드」 조사 결과 발표
- '23년 1,000대 기업 72.5조원 연구개발(R&D)
투자, 8.7% 증가

2024-06-2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대상 상장기업 및 기타외감법인 중 2023년 개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내 R&D 투자액 상위 1,000대 기업 선정(2024.3월 공시기업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 ① 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하였으나 R&D 투자액은 '22년 대비 5.8조원(8.7%)이 늘어난 72.5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3.9%에서 4.4%로 증가해 국내 R&D 투자를 견인함

* '22년 기준 국내 기업 전체 R&D 중 1,000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4.6%

<「R&D 투자 1,000대 기업」주요 동향 (단위 : 조원,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R&D 투자액	40.7	41.6	42.6	46.0	49.6	53.6	55.4	60.4	66.7	72.5	6.6
(증가율)	(3.3)	(2.2)	(2.5)	(8.1)	(7.8)	(8.1)	(3.4)	(8.9)	(10.5)	(8.7)	6.6
매출액	1,211	1,147	1,143	1,262	1,321	1,249	1,222	1,426	1,690	1,642	3.4
(증가율)	(-2.9)	(-5.3)	(-0.3)	(10.4)	(4.7)	(-5.5)	(-2.2)	(16.7)	(18.5)	(-2.8)	3.4
매출액 대비 R&D 투자	3.4	3.6	3.7	3.7	3.8	4.3	4.5	4.2	3.9	4.4	-

- ②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총 45.5조원, 50대 기업이 총 56.6조원을 투자해 각각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62.7%, 78.1%를 차지함.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 합계 21.6조원보다 큰 23.9조원(전체의 3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③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 포함되었는데,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797억원, 69위)가 가장 많이 R&D 투자를 함. 특히, 중견기업은 '14년 407개에 비해 84개가 증가했고,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혁신생태계에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④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 왔으나, '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하며 미국(827개),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하였으며 50위 권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됨 (출처:2023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3.12월)

* 우리나라 '23년 1,000대 기업 R&D 투자 72.5조원은 '22년 기준 중국 679개 기업투자액 301조원의 약 1/4, 미국 827개 기업 투자액 715조원의 약 1/10 수준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5.14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함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의 대주단협의회 설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을 규정한 협약('09.8.5일 제정, '23.4.24일 개정)

PF 대주단 협약 신청·개시 현황('23.4월~'24.3말 기간중 누계 기준)

(단위 : 건)

구 분	신청(a)	미개시(b)			개시 (c=a-b)	중단·종결(d)			진행 중 (e=c-d)
		부결	협의중			중단	종결		
금융권 협약	183	28	22	6	155	30	26	4	125
업권별 협약	301	13	8	5	288	84	73	11	204
저축은행	157	4	4	0	153	61	51	10	92
새마을금고	86	5	3	2	81	18	17	1	63
상 호	57	3	0	3	54	5	5	0	49
여 전	1	1	1	0	0	0	0	0	0
계	484	41	30	11	443	114	99	15	329

사업장 금융지원 현황('24.3말 기준, 중복 포함)

(단위 : 건)

구 분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협약 구분	금융권 협약	95	86	11	3
	업권별 협약	168	162	20	18
계		263	248	31	21

주요 내용으로는

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 → 3/4 이상)

-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

* 연체가 없거나 해소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협약 시행 이후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적용(다만, 연체이자 있는 경우 만기연장 횟수 산정시 개정 이전 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횟수 포함)

- 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종전 2/3 이상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개정 前 협약은 다른 심의·의결사항(3/4 이상 찬성)과 달리 만기연장에 대해서만 2/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음

-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②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함

-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하여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 * PF대주단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되었으며 자료 수집, 기록 및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	2024-06-27 시행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절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및 제3조)

- 기획재정부장은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은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방법·절차 (제15조)

-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75퍼센트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대상 물자 및 원재료로 정함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은 반기별 운영 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해당 위원회가 공급망 위험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함

③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제19조)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안정화 계획에는 수입선 다변화 계획, 생산시설 확충계획, 비축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총 생산량·수입량·비축물량 중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인체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수입선 다변화 및 생산시설 확충계획, 재무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④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 (제22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작성하는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에는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 및 판단 기준, 공급망 위기상황의 단계별 수급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⑤ 위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제2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급망 관련 위기 수습을 위해 설치하는 위기대책본부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기대책본부장은 위기대책본부의 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제29조)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28 시행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 2024. 6. 30. 시행)됨

이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등을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 신설)

-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취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정함
-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대상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②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 신설)

-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등을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는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해당 협회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전담기구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함

③ 수사기관 등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제53조의6 신설)

-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은 그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등을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대행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등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2024-06-27 시행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인상된 보조율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규정 (제2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제천시 등, 충청남도 천안시·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영주시·문경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정함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및 제4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에 해당 시·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해당 시·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해당 시·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함

③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

-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함

④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 및 제10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지역개발·국토계획·관광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명으로 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도지사가 되도록 함

⑤ 사업의 시행승인 절차·방법 등 규정 (제13조)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사업의 개요,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사업비의 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의 투자능력, 투자재원 확보의 적정성,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목적·개요, 사업 시행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⑥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 특례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80을 그 한도로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⑦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산지전용 특례 규정 (제18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25 시행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종전에는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외에 전기안전공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파트를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를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에서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제20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호 등)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28 시행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해체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제조하는 유형의 재활용은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등의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압력측정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해당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기준을 상향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제2항제4호의3 신설, 제10조제10호의5 신설, 제18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 신설 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

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제1호 삭제, 제3조제3항, 제26조제1항제4호 삭제,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제29조제6항제3호 신설 등)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6-28 시행

(다만,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반이월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 (제24조제1항제9호)

- 사다리식 통로에 등반이월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반이월을 설치하고, 등반이월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②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및 제673조제1항)

-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③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제42조제4항 신설)

-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④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 (제87조제8항 및 제9항)

-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

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⑤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 (제130조제2항 신설)

-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⑥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 (제261조제3항)

-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 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⑦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제290조 및 제295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 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⑧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정비 (제477조부터 제485조까지 삭제)

- 현재 제조·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정비함

⑨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 (제619조의2)

-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다만, 일부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

이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함

②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③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 (제203조)

-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 (제211조제5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25 시행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4조제1항제26호 신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6-27 시행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

이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6조의2 신설, 제23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6-25 시행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수탁기업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그 신청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공급원가의 변동비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3조의4제7호 신설, 제14조의5제2항 삭제, 제14조의5제4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3호)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8 ~08.07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구의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 이동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정·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5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구의 지정 방식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제1항의 삭제 등)
 -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 ②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조항 정비 (안 제12조의4제2항)
 -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44-202-4749, 팩스: 044-202-6027)

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6. ~08.05.
-----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민이 주민 등록을 둔 건축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음대책지역 구역에 포함 가능한 경계기준 신설 (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도시지역은 구역에 연접한 지번, 비도시지역은 공동생활권을 고려,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명확화 (안 제22조제2호)

-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국방부 환경소음팀 (전화: 02-748-5894)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08.05.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신설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안 제4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③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관리 체계 마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④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안 제13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 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안 제18조제1항)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데이터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⑥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안 제21조제2항)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http://www.mh.go.kr) (전화: 044-205-2466, 팩스: 044-204-8926)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4.06.26.
~08.05.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툰·웹소설에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업계 및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바, 이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의2호)

②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 및 웹소설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③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3호)

- ④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제6항)
- ⑤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 주체 규정 (안 제28조제1항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화: 044-203-3243, 팩스: 044-203-3494)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5.
~07.12.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추가와 소상공인 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확대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 추가 (안 제4조의3)
- ②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 (안 제4조의4)
 -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시 30일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되 소상공인은 90일까지 유예기간 확대
- ③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추가 (안 제5조의5, [별표 1])
-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이용범위 규정에 대한 전기사업법 근거 조항번호 수정 (안 제7조의3)
-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전력거래소를 추가 (안 제62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화: 044-203-3904,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25.
~07.30.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신사업 중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관련 별지 서식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및 한국전력거래소 생략문구 수정 (안 제7조의2, 제17조의2)
- ② 한전·전력거래소·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7,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화: 044-203-3904,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7.
~07.11.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업 등록기준 미달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취소 유예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7 신설)
 - 소상공인이 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6.27.
~07.11.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는 경우 전력이 생산되어 해체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 업자가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체하는 공사가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공사의 정의 개정 (안 제2조)

- 전기공사업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전기설비의 해체공사 중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6.24.
~08.05.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기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 (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화: 044-201-7346, 팩스: 044-201-7351)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6.27.
~08.06.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1. 31. 시행)됨

이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신청,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 (안 제2조제1항제5호, 별지 제8호 서식)
- ②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 ③ 소방시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안 제6조의2제3항)
- ④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 서식)
- 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 (안 제13조제1항,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 ⑥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19조제2호, 별지 제29호 서식)
- ⑦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안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 ⑧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별표 4의4, 별지 제36호의4 서식)
- ⑨ 기타 법제명 및 법령 조문 자구 수정 (안 제11조,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별표2의2, 별표 4의2,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0호의2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

※ 문의처 : [소방청 소방산업과](mailto:sofang@fire.go.kr) (전화: 044-205-7507)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06-24 발의
-------	--	---------------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06-24 발의
---------------------	-------------------------------------	---------------

가맹사업은 2018년 실태조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의 6.9%를 차지하고, 고용은 경찰인구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산업임

현재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부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에 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특히 점주협의회를 결성해 본사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안 제13조제2항)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4조의3제2항)
- ④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안 제37조의2제2항)
- ⑤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안 제41조제1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06-26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조의2 신설)
- ②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5
-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 ④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 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제2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06-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렵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 ②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 ③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에 있어서 가맹사업자로 보도록 함 (안 제15조의6 신설)
- ④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 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제2항)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2024-06-25 발의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06-25 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급속히 커짐.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원에서 2018년 113조원, 2019년 137조원, 2020년 158조원 등으로 늘었고,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190조원으로 급증함. 이후, 2023년에 200조원을 돌파함

온라인플랫폼 급성장과 함께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짐.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함. 중개서비스업자는 입점업체의 판매가격과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함.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발생함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음.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함.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권리구제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감독·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안 제7조)
-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③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안 제12조)
-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안 제15조)
-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재화등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⑦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안 제17조)
- ⑧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8조)

- 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 ⑩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안 제31조)
-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 ⑫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음 (안 제35조)
- 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안 제37조 및 제38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등 14인)

2024-06-26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06-27 발의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와 수도·가스·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가스·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75조제2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2024-06-28 발의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약받은 금전의 이용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약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74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8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

2024-06-27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현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여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과 발행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생활밀착업 업종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자금의 역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 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 문화 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③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 (안 제2장)
 -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 (안 제7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장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0조)
 -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의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④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 (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 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 (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 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장)**
- ⑦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2024-06-26 발의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콘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6-27 발의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06-24 발의

최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안 제7조)
- ④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⑦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6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3인)

2024-06-28 발의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 가능성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안 제7조)
- ④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⑦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6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4-06-25 발의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3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1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 등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에서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장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2항, 제13조의6 및 제33조제6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44인)

2024-06-25 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내 공기업의 적자 등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이 급등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박지혜의원 등 55인)

2024-06-25 발의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③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1조)
- 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⑧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
-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06-26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임 (안 제11조의2 제1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024-06-27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6-27 제출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06-27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

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할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4-06-24 발의

2024년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이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중소기업체와 해당 청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 ②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8조의3제3항 신설)
- ③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8조의5 신설)
- ④ 정부는 임금, 고용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의6 신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06-24 발의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06-26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제165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2024-06-25 발의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탄소발자국·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및 제1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06-26 발의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당)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23조)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등 12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녹색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등 17인)

2024-06-24 발의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업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 (안 제13조의4제1항 단서)

-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토지이용계

확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 이에,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②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 (안 제13조의4 제1항제3호)

- 현행 산업입지법은 준공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③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9조의11제2항 및 안 제39조의16)

- 재생실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수립·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는 계획
-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간을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기존에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만아니라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 그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06-24 발의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2024-06-25 발의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는 동안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대비 15% 이하로, 인구 비중 또한 15%대 수준으로 감소했음.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수도권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망 구축에 의한 생활권 단일화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는 완성이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특히,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울·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창원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를 잇는 철도로,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경상남도 주요 도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자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③ 이 법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안 제7조)
- ⑤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⑥ 시·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⑦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⑨ 사업시행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2024-06-26 발의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종과,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 목적과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칭 변경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등)

- 현행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과 현행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기능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3인)

2024-06-26 발의

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 (안 제39조제2항 등)

②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2024-06-27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⑤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⑦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⑧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안 제13조 등)
- 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⑩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

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⑪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 (안 제25조)
-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국토교통위원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2024-06-28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대정부질문	7/2(화) 14:00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 안건 심의
	7/3(수) 14:00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7/4(목) 14:00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7/1(월) 10:00	- 현안질의
정무위	전체회의	7/4(목) 10:00	- 간사 선임의 건 등
과방위	전체회의	7/2(화) 미정	- 현안질의 등
행안위	전체회의	7/2(화) 10:00	- 간사 선임의 건 - 법안 상정 - 현안질의(화성 공장 화재 관련)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7/4(목) 10:00	- 간사 선임의 건
국토위	전체회의	7/3(수) 13:20	-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1(월) 10:00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토론회	이인선·김원이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월) 10:00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전용기·윤종균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7/1(월) 14:00	2024 거버넌스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김영배 의원실, 거버넌스센터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월) 14:00	K-밸류업을 위한 연속 세미나 #1 -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월) 14:00	글로벌 보건의로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	차지호·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화) 07:30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2(화) 10:00	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	이소영·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2(화) 10:00	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7/2(화) 13:30	국가청렴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정성호·조배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화) 14:00	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 -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한준호·민홍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화) 14:00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 회 - 다가구/신탁사기/다세대/공동담보/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한창민·문진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실
	7/3(수) 10:00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 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3(수) 13:30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윤건영·한창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7/3(수) 13:3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 제도 개선방안 모색	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3(수) 14:00	화성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정책토론회	송옥주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7/3(수) 18:30	노동입법 세미나 3강 - 노조할권리 보장 및 노조법 핵심내용	김주영 의원실, 민 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7/4(목) 10:00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차규근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4(목) 10:30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세미나 -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7/4(목) 13:00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정혜경·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자료집 등	7/1(월)	「THE 현안」 제17호 발간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국회도서관	
	7/3(수)	「금주의 서평」 제685호 발간 - 도서명 : 정의로운 도시 저자 : 수전 S. 페인스타인		
	7/4(목) 15:00	「국회 AI 포럼」과 함께하는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		국가전략 정보센터
	7/1(월)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1(월)	「Futures Brief」 제24-06호 발간 -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 세대별 비교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24(월)	「THE 현안」 제16호 발간 - 사이버안보	국회도서관	
	6/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8호 발간 -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6/26(수)	「World&Law」 제12호 발간 - 근무시간 외 연락하면 벌금이라고?		
	6/26(수)	「금주의 서평」 제684호 발간 - 도서명 : 불편한 연금책 저자 : 김태일		
	6/27(목)	「현안, 외국에선?」 제85호 발간 - 미국의 이민 문제와 프랑스의 이민법 개정		
	6/24(월)	분석보고서 :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6/26(수)	분석보고서 :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6/26(수)	「2024 NABO 경제동향」 제43호 발간		
	6/27(목)	제22대 국회 개원 대비 「정책자료집 II」 발간 -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6/28(금)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7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6/24(월)	「이슈와논점」 제2252호 발간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6/24(월)	「NARS 현안분석」 제323호 발간 -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6/25(화)	「이슈와논점」 제2253호 발간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6/25(화)	「제16차 노인인권포럼」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6/26(수)	「이슈와논점」 제2254호 발간 -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6/27(목)	「이슈와논점」 제2255호 발간 -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시장상황 점검		
6/27(목)	[국회개원 기획세미나] - 4·10총선 분석과 제22대 국회 전망		
6/28(금)	「NARS 입법정책」 제151호 발간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6/28(금)	「이슈와논점」 제2256호 발간 - 스톡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6/28(금)	「NARS 현안분석」 제2324호 발간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6/28(금)	「특별보고서」 제5호 발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6/24(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6.24~06.3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24(월)	중국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6/27(목)	건설/부동산	분양계약 취소·해제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 동향
6/27(목)	금융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회원의 불법적인 카드승인 취소로 미지급된 카드거래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카드사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6/28(금)	노동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6/28(금)	ESG	ESMA, ESG 펀드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간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